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9. 14. ~ 10.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조사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제3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세계측지계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 긴반지름과 짧은반지름의 비율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3563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② 해양정보간행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와 높이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수준점: 해양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심 및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 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3.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조사 기술·장비 및 그 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
2. 해양예측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해양정보 구축·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4. 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6. 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7.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연구·개발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水深) 30미터 미만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일반선박의 항해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이 위치한 해역에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행위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6.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이하 “항만구역등”이라 한다)에서 하는 항만공사 또는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항만공사 또는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항만구역등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9.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10. 해면 또는 수중(水中)에 시설물 또는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전선 등을 설치 또는 변경(수심의 변화가 없

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행위(그 공사 등과 관련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준공도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를 항행통보에 게재할 때에는 항해용 간행물의 발간 일정, 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일정을 정해야 하며, 필요 시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 게재 기준,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되거나 변경된 해양지명
2. 대표위치(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내용·시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등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해양조사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조사와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분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말한다) 또는 특급해양조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을 것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비 등 교육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

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정보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제17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19조(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20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이하 “해양정보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정보의 수집·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해양정보의 제공, 유통·활용의 촉진 및 지원
3. 해양정보의 목록 공개 및 자료의 정확성 유지 등 관리
4. 국가해양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의 확보
5. 해양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6.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정보 관련 시스템 간

의 연계 및 해당 정보의 수집·가공·제공·유통 등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의 승인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로 하며, 복제 및 비슷한 제작물 발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용 간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작하려는 경우
2. 해양정보간행물을 편집하거나 해양정보를 이용해 항해용 간행물과 같은 목적의 간행물을 발행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복제·유사간행물 발행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시장의 교란과 해상교통안전 저해 가능성,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복제 등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2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 중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업자 중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것

③ 인쇄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함께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가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5조(협회의 운영 등) 정부는 협회의 운영 및 법 제54조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손실보상)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고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변경·고시
3. 법 제9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및 고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및 변경내역 고시
5.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 계획의 공고 및 게재
6.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조사 연구·개발, 연구기관의 설립 및 비용의 지원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사용 권고
8.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해양관측의 실시, 해양관측 정보의 수집·관리 및 각종 통계의 생산·관리
9.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10.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
1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출입 허가
12. 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및 해양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13.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등의 연구·분석 및 추세 예측

14.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및 자료의 제출 요청
15. 법 제20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접수 및 항행통보 게재
16.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17. 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접수, 심사 및 결과 통지
18.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항행통보 게재 및 항해용 간행물 반영
19.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20. 법 제23조제1항 및 3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신청의 접수 및 자료의 제출 요청
21.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
2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23. 법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및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24. 법 제26조제4항·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확인
2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2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27. 법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8. 법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수리 및 통지
2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
30.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신고의 접수
31. 법 제35조제3항·제4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32. 법 제36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공고
3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에 대한 대가의 기준 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34. 법 제40조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개발·확보 및 유지·관리
3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36. 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정보의 보관·열람·공표 및 사본 발급
3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38.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공동조사 및 기술협력
39.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40.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운영

41. 법 제47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간행 및 판매·배포 및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 고시
42. 법 제47조제3항·제4항에 따른 항행통보 간행 및 정보 제공
4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인
44. 법 제49조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 접수
45. 법 제50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및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의 결정·고시
46. 법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수리 및 통지
4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8. 법 제53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
49.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명령과 업무 검사
50.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 및 판매대행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조사
51. 법 제56조에 따른 청문
5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출입, 변경 및 일시 사용
5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
54. 법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 업무의 수행
55.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6.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게재 기준 등의 결정·고시
57.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조사기술자가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로도서지를 제작한 경력을 2022년 2월 18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한다.

제3조(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이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이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 등)”을 “(측량의 대가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앞에 “제8절 협회”를 삭제한다.

제2장제8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의 제목 “(지명과 해양지명의 고시)”를 “(지명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를 “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명 또는 해양지명”

을 “지명”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측량·지적 또는 수로”를 “측량·지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로 한다.

제93조 중 “지명이나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5조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를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측량업의 등록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각각 “측량업”으로 한다.

제10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해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5제1항 중 “수로측량을”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을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해양기준점을”로 한다.

⑦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

⑨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도(海圖)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로도지(水路圖誌)”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도면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가목의 해도(海圖)”로 한다.

⑪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1조 관련)

등급	자격기준	
	기술자격	학력·경력
1. 특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고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중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초급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다음 각 목과 동등 이상의 학

	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측량 및 해양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5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및 해양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해양조사 분야에서 계획·설계·지도·감독·심사·감리·조사·연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개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A급 수로측량사·해도제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고, 같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B급 수로측량사·해도제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4. 위 표의 학력·경력과 관련하여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의 방법·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초급해양조사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 중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내용(제12조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내용 및 교육시간

구분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시간
가. 기본교육	초급교육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등의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35시간
나. 전문교육	중급교육	중급수준의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5시간
	고급교육	고급수준의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5시간
	특급교육	특급수준의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5시간

2. 교육훈련의 시기

- 가. 최초로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나. 중급,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려는 자는 승급신청일 전 승급대상 등급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다. 해당 등급을 유지하려는 자는 교육을 이수한 지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라. 질병·입대·해외출장이나 법령에 따라 신체적 자유를 구속 받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육훈련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3.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가. 다음의 교육을 해양조사업무 수행 중에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

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수로측량·해도 제작 교육 등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교육 중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련된 과목의 이수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공무원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해양조사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14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제2호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나. 해양조사기술자는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해당 기관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해당 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4조 제1항1호	지정취소		
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14조 제1항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제14조 제1항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경우				
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4조 제1항4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4]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1. 해양관측업	다음 각 목의 등급 이상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특급해양조사기술자 나. 고급해양조사기술자 다. 중급해양조사기술자 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출 것 가. 수준의(1급 이상) 1조 이상 나. 유속계 1조 이상 다. 조위계 1조 이상 라.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1급 이상) 1조 이상
2. 수로측량업	다음 각 목의 등급 이상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특급해양조사기술자 나. 고급해양조사기술자 다. 중급해양조사기술자 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출 것 가. 수준의(1급 이상) 1조 이상 나. 조위계 1조 이상 다. 채니기 1조 이상 라. 단빔 음향측심기 1조 이상 마.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1급 이상) 및 해상용 위성항법장치(GPS)수신기 각 1조 이상 바. 지층탐사기 1조 이상 사. 다중빔 음향측심기 1조 이상 아. 사이드스캔소나 1조 이상 자. 자료처리 전산장비 1조 이상
3. 해도제작업	다음 각 목의 등급 이상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특급해양조사기술자 나. 고급해양조사기술자 다. 중급해양조사기술자 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출 것 가. 국제표준에 따른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검수 소프트웨어 1식 이상 나. 전지 규격의 컬러출력기 1대 이상
4. 해양정	별표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보 서 비 스 업	다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 1 명 이상을 보유할 것	
--------------	----------------------------------	--

비고

1.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기성능검사를 마친 장비로 갖추어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가 해양조사·정보업의 어느 하나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해당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기술인력·시설·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기술인력·시설·장비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검수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종류	업무 범위
1. 해양관측업	가. 조석·조류·해류·수질·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 나.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해양관측 다. 해양관측 자료처리·분석 및 도면의 작성 라. 해양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정보 처리, 분석 및 예측
2. 수로측량업	가.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항로·어항 등에서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나.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다.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라.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수로측량 마. 해안선 조사 등 수로측량 바.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관측 사. 수로측량 관련 도면(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은 제외한다)의 작성
3. 해도제작업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및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구축, 편집, 출력
4. 해양정보서비스업	가.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나. 해양정보(해양위성자료 포함)의 수집·가공·관리·유통·판매 또는 제공 다. 해양정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개발(해양관측업·수로측량업·해도제작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해양조사를 방해한 자	법 제66조 제1항제1호	150	200	300
나.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6조	150	200	300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자	제1항제2호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66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6조 제1항제4호	9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	법 제66조 제1항제5호	90		
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법 제66조 제1항제6호	90		
사.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6조 제1항제7호	90	100	150
아.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6조 제1항제8호	150		
자.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6조 제1항제9호	150		
차.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30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자	법 제66조 제1항제11호	150	200	250

타.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항해용 간행물을 보급한 자	법 제66조 제1항제12호	150	200	250
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 관련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6조 제1항제13호	150	200	3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66조 제1항제14호	90	100	150
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6조 제1항제15호	90	100	1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연 락 처	(044) 200 - 5357